

『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도로명주소법」에 따라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내용 등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,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명 개정
 - 현행 :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
 - 개정 : 구미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에 맞게 조문 정비
 - 현행 : 읍면동사무소소재지
 - 개정 :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
- 사무소 소재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(안 별표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도로명주소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도로명주소법」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, 시청 및 읍·면·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